
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
2024년도 운영계획서

2024. 01.

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

|| 목 차 ||

I. 운영개요

1. 법적근거	1
2. 운영목적	2
3. 운영목표	2
4. 운영기간	2
5. 운영내용	2
6. 협의체 구성현황	3

II. 세부운영계획

1. 분야별 운영계획	6
-------------------	---

구분	주요내용
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분과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연차별 계획 평가 및 분석 ○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
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협의체 회의 ○ 실무협의체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연차별 계획 평가 및 분석 ○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
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분과 회의 ○ 협의체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캠페인
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협의체 회의 ○ 분과기획사업 공모 ○ 사회복지 지역 특성화사업 공모
5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협의체 회의 ○ 실무분과 회의 ○ 분과기획사업 선정 및 시행 ○ 사회복지 지역 특성화사업 선정 및 시행
6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협의체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2024년 계획 실행과정 ○ 복지역량강화 교육 ○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원도대회 참석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○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

구분	주요내용
7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분과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2024년 계획 실행과정, 2025년 연차별계획 ○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
8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협의체 회의 ○ 실무협의체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2025년 연차별 보장계획 검토
9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분과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2024년 계획 실행과정, 2025년 연차별 보장계획 수정 ○ 협의체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캠페인
10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협의체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2024년 계획 실행과정, 2025년 연차별 보장계획 수정 ○ 민·관 합동 워크숍 준비 ○ 분과기획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○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참석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○ 사회복지 지역 특성화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
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분과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2025년 연차별 보장계획 심의 ○ 민·관 합동 워크숍 ○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○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 결과보고회 및 전체위원 간담회
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협의체 회의 ○ 실무협의체 회의 ○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

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도 운영계획서

I

운영개요

1. 법적근거

○ 사회복지급여법 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
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·군·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
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 ~ 이하 생략 ~

③ ~ 이하 생략 ~

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
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사회복지급여법 시행규칙 제5~6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
제5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,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 ~이하 생략~

제6조(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(이하 "실무협의체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~ 이하 생략 ~

○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

2. 운영목적

-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 참여복지 구현
-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 기반 마련으로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대응하고,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-stop, One-stop으로 제공
-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
-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·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

3. 운영목표

-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심의, 평가 및 건의
- 사회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복지정책의 수립, 모형개발 및 건의
- 지역사회 보건·복지 연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활성화
-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민·관 협력 서비스 체계를 구축
-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역복지 특화모델 등 제시

4. 운영기간

- 2024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

5. 운영내용

가. 회의 운영

- 지역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협의, 심의, 건의
-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별로 회의 운영
-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및 공모사업 심의 운영(운영위원회)

나.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계획 심의

- 2024년도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및 2025년 계획 수립 및 심의

다.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

- 협의체 실무분과 위원들의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 실무분과 위원 대상으로 우수기관 벤치마킹 진행
- 협의체 위원 대상으로 인식 제고 및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
- 다각적인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분과기획사업 개최
-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의 홍보 및 복지체험 등을 위한 어울림한마당 개최
- 국내 활성화된 협의체 벤치마킹 및 전국대회 참가를 통한 동해시협의체 발전 방향 제시
- 공공과 민간 복지 간 자원 연계·협력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한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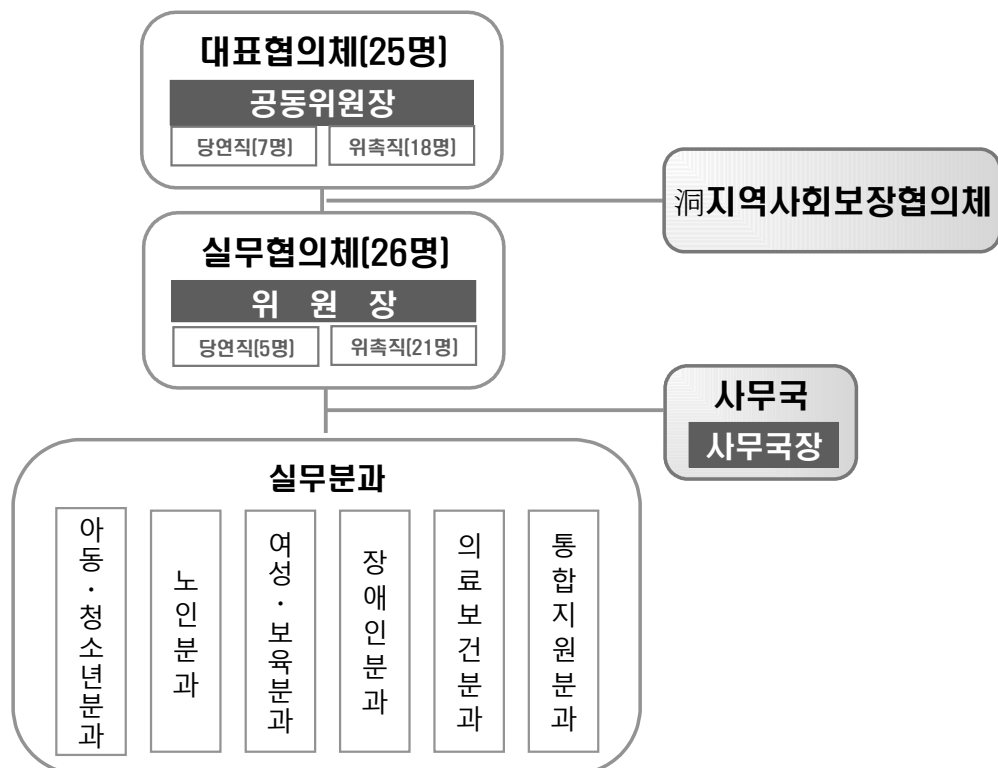
라. 외부추천이사 운영위원회

-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연중 수시 공모를 통해 추천 가능한 인력풀 구성

마. 홍보사업

-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안내

6. 협의체 구성현황



가. 대표협의체

- 공동위원장 : 공공위원장 - 심규언(동해시장)
 민간위원장 - 손진아(강원대학교 삼척교양교육센터 교수)
- 부위원장 : 염규성(목호노인종합복지관 관장)
- 現 위원임기 : 2023. 09. 01. ~ 2025. 08. 31.(2년)
- 위원구성
 - 당연직 : 7명
(시장, 행정복지국장, 보건소장, 복지과장, 가족과장, 동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, 실무위원장)
 - 위촉직 : 18명

나. 운영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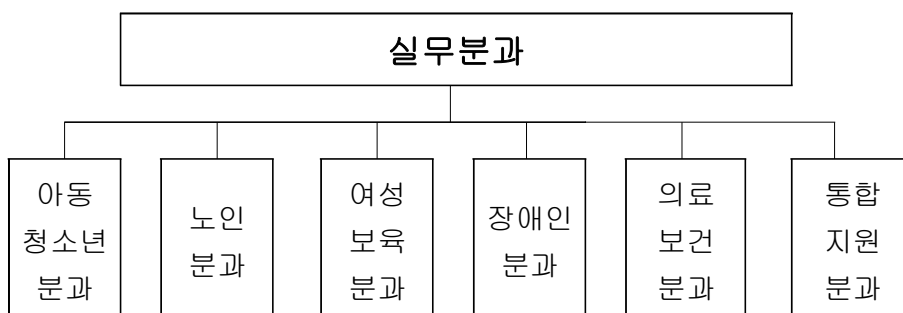
- 위원구성
 -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,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, 보건소장, 복지과장, 가족과장, 희망복지팀장

다. 실무협의체

- 위 원 장 : 이상철 - 동해시장애인주간보호소 시설장
- 부위원장 : 최문정 - 동해시가족센터 팀장
- 現 위원임기 : 2023. 09. 01. ~ 2025. 08. 31.(2년)
- 위원구성
 - 당연직 : 5명
(희망복지팀장, 경로팀장, 보건행정팀장, 천곡동 맞춤형복지팀장, 동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계장)
 - 위촉직 : 21명(※ 실무분과 분과장 6명 포함)

라. 실무분과

- 각 실무분과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추대
(※ 실무분과 분과장 변경 시 실무협의체 위원도 변경되며, 위원 임기는 실무협의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함)



○ 실무분과 운영의 목적

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연계·협력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·운영함

○ 실무분과 구성 및 역할

- 아동·청소년분과 : 아동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, 아동 인권보호 및 안전한 환경조성 등의 아동 복지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아동정책을 제안하며, 청소년 문화 활동 및 개발활동, 청소년 복지,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개발 및 청소년 정책공유 및 제안 활동
 - 노인분과 : 노인복지분야 활동기관들이 연합하여 노인복지욕구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연구, 노력하는 분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보장, 건강 보장 및 여가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며, 연약한 저소득노인보호를 위해 지역사회보호체계 및 환경을 구축
 - 여성·보육분과 : 여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인재개발 및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 민·관이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하며, 보육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정책을 제안
 - 장애인분과 : 지역장애인들의 경제적, 생활적, 공간적 자립과 재활지원을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보장받고 장애인복지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연구와 노력 의지를 갖고 장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과
 - 의료보건분과 : 소득,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지원과 예방중심 통합적 건강증진이 가능하도록 활동
 - 통합지원분과 : 지역사회의 인적·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사회복지 사업을 수행, 논의하며, 교육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계증진 및 내·외적 역량을 강화하며,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교육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교육격차를 해소
- ※ 대상 :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대상층의 복지서비스 제공
※ 주요사업 : 가족기능강화사업, 지역사회보호사업, 지역사회조직사업, 교육문화사업, 특화 및 자활사업

마. 사무국 : 사무국장 1명

1. 분야별 운영계획

가. 회의운영

- 대표협의체 회의
 - 회의 개최 : 분기별 1회(연 4회)
 - 회의 내용

예정일	주요안건
2월	○ 2023년 협의체 결산보고 ○ 2023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평가 및 심의
5월	○ 분과기획사업 및 사회복지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○ 사회복지장 심의
8월	○ 2024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중간평가 ○ 사회복지장 심의
12월	○ 2025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(안) 심의 ○ 2024년 협의체 실적 보고 ○ 2025년 협의체 운영계획(안) 및 예산(안) ○ 사회복지장 심의

- 운영위원회 회의
 - 회의 개최 : 수시(안건 상정 시)
 - 회의 내용 :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및 공모사업 심의
- 실무협의체 회의
 - 회의 개최 : 연 6회
 - 회의 내용

예정일	주요안건
2월	○ 2023년 협의체 결산보고 ○ 2023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평가 논의 ○ 대외 협력사업 논의
4월	○ 분과기획사업 및 사회복지 지역 특성화사업 계획(안) ○ 복지역량강화교육 계획 보고
6월	○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계획(안)
8월	○ 2024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중간평가 ○ 대외 협력사업 논의
10월	○ 민·관 합동 워크숍 계획 보고 ○ 2025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(안)
12월	○ 2024년 협의체 실적 보고 ○ 2025년 협의체 운영계획(안) 및 예산(안)

- 실무분과 회의
 - 회의 개최 : 연 6회 이상
 - 회의 내용

예정일	주요안건
수시 (홀수 달, 각 분과별 6회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분과별 협의체 사업 논의 ○ 각 분과별 연차별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논의 ○ 분과기획사업 논의 ○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방안 논의 등

나. 지역사회보장 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/ 수립

- 각 분과별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
 - ⇒ 실무협의체에서 분석·평가·검토
 - ⇒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확정

다. 협의체 활성화 사업

- 교육사업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
 - 일 정
 - ▶ 교육사업(역량강화교육 및 민·관 합동 워크숍) : 2회
 - ▶ 우수기관 벤치마킹(강원도 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와 병행) : 6월, 10월
 - 대 상 : 시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,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, 사회복지시설·기관·단체 종사자, 협의체 우수위원
 - 내 용 : 복지역량강화, 민·관 협력 우수사례 전파 및 정보교류,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동기부여에 따른 타 시·군 벤치마킹 및 연수
- 분과기획사업
 - 계획구상 및 공모 : 1월 ~ 4월
 -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: 5월
 - 사업시행 : 5월 ~ 10월
 - 내 용 : 다각적인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각 분과특성에 맞는 복지역량강화 및 복지기획사업

○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원도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

- 일 정 : 6월, 10월
- 대 상 : 협의체 대표위원장, 실무위원장, 분과위원, 담당공무원, 사무국장
- 내 용 :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네트워크 강화 및 비전 공유

○ 사회복지 지역 특성화사업

- 계획구상 및 공모 : 1월 ~ 4월
-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: 5월
- 사업시행 : 5월 ~ 10월
- 내 용 : 공공과 민간 간 자원 연계·협력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

○ 대외 협력 홍보사업

- 일 정 : 2회(상반기, 하반기)
- 대 상 : 시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, 동해시민
- 내 용 :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캠페인, 협의체 리플릿 및 홍보 현수막, 홍보 물품 제작

라. 외부추천이사 운영위원회

-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연중 수시 모집을 통해 추천 가능한 인력풀 구성

마. 홍보사업

-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협의체 활동 사업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안내